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퇴직급여 충당금 예금계좌 관리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○○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○○과는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 내 공금계좌를 개설·관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따르면, 자치단체의 수입·지출은 원칙적으로 입·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,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사업부서장, 관서별 지출원, 회계부서장은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(사업부서장 분기별, 관서별 지출원 반기별, 회계부서장 연 1회 이상)으로 계좌 거래내역, 잔액 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재무과에서는 ‘재무행정시스템 개선 및 관리 강화 계획[재무과-6935 (2022.4.15.)]’을 수립하여 계좌개설 결재 시 지출팀장 협조 결재 후 재무과로

공문을 발송하고, 계좌 관리담당은 통장의 분기별 입출금내역을 스캔하여 내부결재를 통해 정기적·자체적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였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○○과는 재무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계좌로 입금된 퇴직급여 적립금을 대상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1년 만기 적금통장을 개설하여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하였으며, 계좌 신규 개설 내부결재 시 지출팀장 협조를 받지 않고 분기별 입출금내역 및 잔액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예금계좌 관리 책임의 상호검증 및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○○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○○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